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개정 「상법」 길라잡이

2026. 3. 11.



법무부

목 차

주요 내용	1
질문 및 답변	4
1. 자기주식 소각의무의 적용 대상에 비상장회사, 벤처기업 등 포함되는지	4
2.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작성시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지	5
3. 합병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도 소각을 해야 하는지, 소각해야 한다면 그 절차가 어떠한지	6
4.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7
5.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경우 중 '회사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8
6. 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이 가능한지	9
7.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보유만 할 경우에도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10
8. 주주총회에서 수년에 걸쳐 자기주식을 처분하겠다는 내용으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승인받았을 경우 매년 위 계획에 대해 승인받아야 하는지	11

9. 개정 상법 시행 전 자기주식 처분 결정을 공시하였으나, 시행 전까지 자기주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자기주식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12
10. 취득한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하기 위해서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차기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도 되는지	13
11.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지 못할 경우 위 계획을 정정하기 위해 다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14
12. 자기주식을 소각하고자 할 때, 소각계획도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기재한 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15
13. 회사의 합병·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해 신설회사 등의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지	16
14. 자기주식을 이용한 교환사채, 상환사채 발행할 수 있는지	17
15. 법령상 외국인 지분비율 제한이 있는 회사가 개정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소각할 경우 외국인 지분비율이 법령에서 규정한 제한 한도를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18
16. 개정 상법 시행 前 자기주식의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시행 後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기존에 간접취득한 자기주식'에 해당하는지	19

주요 내용

-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소각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보유, 처분하도록 하는 개정 상법이 2026. 3. 6. 시행되었습니다.
- 이번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법 시행 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시행일부터 1년 6개월 내) 소각해야 합니다.
 - 다만, 임직원 보상, 경영상 목적 등 자기주식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회사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서를 작성 후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자기주식은 의결권, 신주인수권, 배당권 등 권리가 제한됩니다.
 - 모든 자기주식의 소각을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
 - 법령상 외국인 지분비율이 제한되는 회사가 소각으로 외국인 지분비율이 초과될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 이번 길라잡이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개정 상법 시행과 관련하여 국민, 경제계 등에서 법무부에 질의한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개정 상법의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주요 내용	개정 前 법률	개정 상법
① 소각의무 대상 회사 (법 제341조의4)	<신 설>	• 모든 회사(상장·비상장 회사 포함)
② 소각의무 대상 자기주식 (법 제341조의4)	<신 설>	• 모든 자기주식 소각 -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자발적 취득한 자기주식 · 합병 등 특정 목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모두 포함
③ 소각 기한 (법 제341조의4)	<신 설>	•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 단, 시행일 전 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1년 6개월 이내
④ 소각 절차 (법 제343조)	•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시 이사회 결의 • 특정 목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시 자본금 감소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실무)	• 자기주식 소각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일원화
⑤ 예외적 보유·처분 (법 제341조의4)	<신 설>	• 주주 비례·균등 처분,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실시, 법령에 따른 활용, 정관에 따른 경영상 목적의 경우 → 매년 주주총회 승인 후 보유·처분

주요 내용	개정 前 법률	개정 상법
⑥ 자기주식의 처분 (법 제342조)	• 이사회 결의로 처분 허용	• 신주발행 절차 규정을 준용
⑦ 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 (법 제341조의3 제1항)	• 의결권 제한만 규정	• 자기주식의 의결권 및 자익권(배당·신주인수권 등)을 명문으로 제한
⑧ 자기주식 교환사채· 상환사채 발행 금지 및 질권 설정 금지 (법 제341조의3 제2항, 제3항, 제4항)	• 이사회 결의로 교환·상환사채 발행 허용	•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대상으로 하는 사채 발행 금지 •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 금지 명문화
⑨ 기업조직개편 과정에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법 제529조의2, 제530조의13)	<신 설>	• 합병, 분할,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존속 또는 신설·승계회사의 신주를 배정하거나 자기주식을 합병 등의 대가로 이전하는 행위 금지
⑩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 간접취득 (법 제542조의14)	<신 설>	• 상장회사가 신탁계약을 통해 자기주식을 간접취득하는 경우에도 직접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규율
⑪ 외국인 지분비율 제한회사에 대한 예외 (부칙 제2조 제2항)	<신 설>	• 법령상 외국인 지분비율이 제한되는 회사가 소각으로 외국인 지분비율이 초과될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유예기간 추가로 부여
⑫ 자기주식 소각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법 제635조 제3항 제9호 및 제10호)	<신 설>	• 상장회사가 자기주식 소각의무 및 자기주식보유처분 계획 위반시 이사에게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 개정 상법에 의해 자기주식 소각의무의 적용 대상에서 비상장회사, 벤처기업이 제외되는가요

□ 이번 개정 상법은 상장, 비상장회사, 벤처기업 등 **전체 회사**에 모두 적용됩니다.

상 법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회사가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ரி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ரி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회사가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
2. 보유 또는 처분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3.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 나.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
 - 다.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
4. 예정된 보유 기간
5. 예정된 처분 시기

2.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작성시 이사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가요

-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작성은 회사의 중요한 업무의 집행에 해당하므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상 법

제393조(이사회 결의권)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우리 회사는 합병하는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자기주식을 소각해야 하는 것인가요. 소각해야 한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합병 등의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또한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소각하여야 합니다.
- 소각 절차와 관련하여, 개정 상법 전에는 합병 등의 과정에서 회사가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경우에는 소각시 자본금 감소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채권자 보호절차가 필요하다는 학설과 실무례가 있었습니다.
- 그러나 개정 상법에서는 이 경우에도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였으므로(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소각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상 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4.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 상법 제341조의4 제2항은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 ▲ (제1호) 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 ▲ (제2호)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 ▲ (제3호) 회사가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 ▲ (제4호) 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 ▲ (제5호)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

-
- 이 경우에 회사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습니다.

5.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경우 중 ‘회사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 상법 제341조의4 제2항 제5호는 회사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기주식을 예외적으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 한편, 상법 제418조 제2항의 제3자 신주배정 요건에서도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우리 법원의 판결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우리 법원은 ▲ 시설투자 및 경영정상화 계획 수행을 위한 **외부자금 조달**(부산고등법원 2013나2139 판결), ▲ 외국인 **투자 유치**(서울고등법원 2007나65674 판결), ▲ 친환경 **신사업 협력 및 안정적 원료조달** 등(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52067 판결)에 대하여 경영상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 다만 개별 사안에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 법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5.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6. 자기주식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가요

- 상법 제341조의4 제2항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 법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사가 자기주식보유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회사가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회사가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

7. 우리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보유만 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에도 자기주식보유 처분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하는가요

- 상법 제341조의4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합니다.
- 다만, ①제341조의4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자기주식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 법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사가 자기주식보유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회사가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ரி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ரி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회사가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8. 주주총회에서 수년에 걸쳐 자기주식을 처분하겠다는 내용으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승인받을 경우 그 내용이 변동이 없음에도 다음 해 주주총회에서 재차 위 계획에 관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요

- 상법 제341조의4 제3항은 ‘회사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간 주주 구성이 변동되므로 자기주식 보유에 대한 주주 의사를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 법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사가 자기주식보유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회사가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회사가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9. 우리 회사는 개정 상법 시행 前 자기주식 처분 결정을 공시하였는데,
개정 상법이 시행될 때까지 자기주식을 처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자기주식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다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요

- 개정 상법 시행 후 자기주식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개정 상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341조의4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 법

제341조의4(자기주식의 소각의무 등) 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사가 자기주식보유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회사가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스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스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회사가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관에 그 사유를 규정한 경우

(이하 중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0991호 상법 일부개정법률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6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개정 상법 시행 전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마치고, 주주총회는 개정 상법 시행 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차기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도 되는 것인가요

- 개정 상법은 시행 전 직접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의 경우, 개정 상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자기주식을 소각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위 기간 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회사는 그 계획에 따라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위 소각 유예기간 내 임시 또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개정 상법 시행 전 취득한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상 법

부 칙

제2조(기존 자기주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회사가 자기의 명의로 계산으로 취득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보유 중인 회사의 자기주식(이하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이라 한다) 및 이 법 시행 전에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명의로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되어 이 법 시행 당시 수탁자가 보유 중인 회사의 자기주식(이하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제34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자기주식을 소각하여야 한다.

1.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의 경우: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 가. 자기주식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질권이 해제된 경우: 해제된 날
 - 나. 이 법 시행 전에 자기주식을 교환·상환의 대상으로 하여 제469조에 따라 발행한 사채에 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변제 등으로 채권이 소멸되거나 교환·상환 기간이 도과한 경우: 채권이 소멸된 날 또는 교환·상환 기간이 도과한 날
2.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의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회사가 수탁자로부터 반환받은 날

11.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 것인가요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작성은 회사의 중요한 업무의 집행에 해당하므로, 이사회를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393조 제1항).
- 따라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거쳐야 하는 것이
상당합니다.

상 법

제393조(이사회에 관한 권한)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를 거쳐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③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사는 3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2. 자기주식을 소각하고자 할 때, 소각계획도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기재한 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 소각은 보유·처분과 별개의 행위로 개정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할 수 있고,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기재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추가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 법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13. 회사의 합병·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해 신설회사 등의 신주를 배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 상법 제530조의13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을 금지합니다.

상 법

제530조의13(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의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금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는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분할회사는 자기주식을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승계회사에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자기주식을 이용한 교환사채, 상환사채 발행은 가능한 것인가요

- 상법 제341조의3 제2항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하는 사채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 법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권리제한 등) ① 회사는 자기주식에 관하여 제369조의 의결권, 제418조의 신주인수권, 제461조제2항에 따른 주식을 발행받을 권리, 제462조 및 제462조의2부터 제462조의4까지에 따른 배당을 받을 권리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③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④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제341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다.

15. 우리 회사는 법령상 외국인 지분비율 제한이 있는 회사입니다. 개정 상법 시행에 따라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지분비율이 법령에서 규정한 제한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개정 상법은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법령상 외국인 지분비율이 제한되는 회사가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해 외국인 지분 비율이 초과될 경우,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상 법

부 칙

제2조(기존 자기주식에 대한 경과조치)

② 제1항 단서 및 제34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회사가 보유하는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 또는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각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자기주식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해당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 또는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에 대하여 제34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해당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9조
2. 「방송법」 제14조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제3호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제1항
6.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제1항
7. 「항공안전법」 제10조제1항제4호

16. 개정 상법 시행 前 자기주식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개정 상법
시행 後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에 해당하는가요
(기존 자기주식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 상법 시행 후 회사가
수탁자로부터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되는가요)

- 부칙 제2조에서는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며, ‘이 법 시행 전에 신탁계획에 따라 수탁자의 명의로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되어 이 법 시행 당시 수탁자가 보유 중인 회사의 자기주식’을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개정 상법 시행 전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개정 상법 시행 후 취득한 경우라면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조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 법

부 칙

제2조(기존 자기주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회사가 자기의 명의로 계산으로 취득하여 이 법 시행 당시 보유 중인 회사의 자기주식(이하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이라 한다) 및 이 법 시행 전에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명의로 회사의 계산으로 취득되어 이 법 시행 당시 수탁자가 보유 중인 회사의 자기주식(이하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제34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자기주식을 소각하여야 한다.

1. 기존 직접취득 자기주식의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 가. 자기주식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질권이 해제된 경우: 해제된 날
 - 나. 이 법 시행 전에 자기주식을 교환·상환의 대상으로 하여 제469조에 따라 발행한 사채에 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변제 등으로 채권이 소멸되거나 교환·상환 기간이 도과한 경우: 채권이 소멸된 날 또는 교환·상환 기간이 도과한 날
2. 기존 간접취득 자기주식의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회사가 수탁자로부터 반환받은 날

